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사업 최종발표토론회 2021-0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일시 | 2021년 10월 26일(화) 14:00 ~ 16:00

장소 | 온라인 Zoom 회의실

<https://zoom.us/j/91534316913>

^^^
서울노동권익센터

〈개 요〉

- 제 목 :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연구사업 최종발표토론회
- 일 시 :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14:00~16:00
- 장 소 : 온라인 Zoom회의실(<https://zoom.us/j/91534316913>)

〈프로그램 진행〉

사회: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

시 간(120분)	주 요 내 용
14:00~14:10 (10분)	개회사 및 인사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14:10~15:00 (50분)	[발표]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환경미화원 편- 최은영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위원)
15:00~15:40 (40분)	[토론1]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 공인노무사) [토론2] 김영수(동아환경(주) 환경미화원, 서울일반노동조합 부위원장)
15:40~16:00 (20분)	청중 토론, 질의/응답
16:00	폐회

〈목 차〉

[발제문]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환경미화원 편- 1

최은영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위원)

[토론문]

토론 I.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토론문 35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 공인노무사)

토론 II.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지원방안 39

김영수 (동아환경(주) 환경미화원, 서울일반노동조합 부위원장)

〈발 표 문〉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편 -

최 은 영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위원)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편

최은영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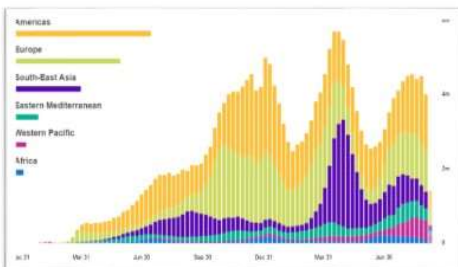
- 목차 -

1. 서론
2. 국내외 필수노동자 논의
3.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노동현황
4.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
5. 정책제언

들어가며

필수노동자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 감염병 위험에서도 일상과 생존의 존속을 위해 **대면 노동**을 하는 노동자
-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도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



<세계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USA Virginia>



<한국 서울 성동구>

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 covid19.who.int_confirmed_cases_per_week (2021.09.16.)
<https://www.communityaccessnetwork.org/a-thank-you-to-essential-workers/>
<https://www.sd.go.kr/>

연구배경 및 목적

- 안전한 일상적 삶을 지켜주는 필수노동
 - 최전방에서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대면 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 종사자
 -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여 과로에 시달리는 배달 종사자
 - 유해물질 쓰레기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 사회 서비스 영역의 필수노동자
 - 보건·의료, 돌봄, 교통·운수, 환경미화, 택배·배달 업종
- 국가 및 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보호법
 - 2021.04.29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
 - 2021.01.07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 서울지역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 사회안전망제도 개편 등의 지원 방안
 - 서울지역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검토

연구 내용 및 방법

- 국내외 필수노동자 논의 검토
 - 해외의 필수노동자 개념과 논의, 지원방안 : 문헌자료
 - 국내의 필수노동자 현황 : 통계청,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차 데이터 활용 분석
- 필수노동자로서 환경미화원의 노동 현황 자료 분석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 : 문헌자료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업무 관련 통계자료 : 환경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자료 활용
- 필수노동자 노동 실태 조사 시행 및 결과분석
 - 연구대상 :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500명
(중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무)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및 1:1 대면면접조사
-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제언
 -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

(국제기구, 미국, 영국, 캐나다)

국제기구에서 바라본 필수노동자

- **ILO - 'Frontline worker'**(최전방 노동자)
 -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종사자
- **OECD - 'Key worker'**(핵심 노동자)
 - 사회기능 및 경제활동의 유지에 핵심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 **Amnesty - 'Essential worker'**(필수 노동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 국제기구의 필수노동자 〉

ILO	OECD	Amnesty
- 보건의료및사회복지종사자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 요양, 돌봄, 청소 종사자) - 운수 및 교통 - 음식 및 식료품업 - 제조업, 도·소매업 종사자 -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종사자 (전기, 수도, 통신 서비스 종사자)	- 병원업 종사자 (보건의료 보조인 포함) - 식품소매종사자 (식품가공 종사자 포함) - 도매업 종사자 - 건물 관리인 - 농업 종사자 - 트럭 기사	-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 (의사, 간호사, 구급차 운전기사, 병원 행정직원 등) - 식품 공급자 (식품점, 배달 서비스업 종사자) - 긴급한 공공서비스 종사자 (대중교통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출처: OECD(2020), Knäbe, T., & Carrión-Crespo, C.R.(2019), Amnesty International(2020)

해외사례 : 미국의 필수노동자

- 필수노동자 범위를 '주요한 인프라의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
- 보건의료, 통신, 정보기술, 국방, 식품 및 농경, 운수, 에너지, 공공행정 등
 - 국토안보부 산하의 CISA(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미국 CISA 필수노동자>

대면노동이 강제되는 영역
사회경제 중추를 이루는 영역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주

의료 돌봄, 사회지원, 음식제조, 음식 소매, 운송, 보안 서비스, 청소 용역 등이 필수 업종
⇒ 직원당 최대 1,200달러의 위험수당 지급

버지니아(Virginia)주

경찰, 소방관, 교정관, 보육교사, 대중교통 근로자, 우편 배달원, 식품점 직원 등이 필수 업종
⇒ 메디케이드 헬스케어 근무자 1인당 1,500달러 지급

뉴저지(New Jersey)주

마트 캐셔, 보육업 노동자, IT 정비 노동자, 건설노동자, 창고노동자 등이 필수 업종
⇒ 백신 우선접종

해외사례 : 캐나다, 영국의 필수노동자

캐나다

-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으로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청소, 교통 및 물류, 환경미화 등의 업종을 필수노동자 자격범위로 지정(EWSP; Essential Worker Support Program)
 - 국세청 CRA(Canada Revenue Agency)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지원 정책, 돌봄노동자대상 정책, 긴급임금보조정책, 기업대상 긴급대출제도 등 시행
 - 재원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각 주정부가 25% 보조하는 형태

영국

- 코로나19 대응, 필수노동자 8개 직업군 보건복지(의사, 간호사, 간병인, 의료지원인력 등), 교육 및 보육(교사·보육교사), 주요 공공서비스(법제도, 공영방송 인력), 지방 및 중앙정부(행정직업군), 치안 및 국가안보(경찰, 소방), 식품 및 필수재(생산·유통·배달), 교통 및 항공, 금융서비스 포함
 - 필수노동자 자녀 돌봄/교육보장, 돌봄 노동자 특별 급여 지급
 - 보건복지부문 필수노동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출처: 이승윤, 백승호 외(2021), 채민석(2020)

국내 필수노동자

(서울지역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원 필수노동자

- ▶ 재난(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중단없이 수행하는 노동자
-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간호사, 임상병리사, 정신건강복
지센터, 그 외 방역인력 등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총 299억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민간가사간병인력 등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시간특례
제외, 대체인력 지원(568억)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제정추진

운송서비스 종사자

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유통관련 배송기사, 대형화물차주,
택배기사,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및 건강보
호 대책 마련, 배달종사자 사고예
방 "정보공유플랫폼" 개발·보급

환경미화 종사자

환경미화원(직/공영/위탁),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원,
재활용품 선별원
생활폐기물 작업 인원 기준 점검,
환경미화원 위생시설 개선 지원,
재활용품 선별지원금 인상 등

기타 업무 종사자

콜센터 상담원
종사자 보호를 위한 콜센터
방역 지침 개정
휴게시간, 휴가보장 등
산업안전·근로감독 실시

출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2020.1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1년 4월 의결 주요 내용)

- ①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②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③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④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출처: 서울노동권익센터 제20회 포럼 권오성 토론자료

서울시 필수노동자

- 서울시는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수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사업,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 구성 등
 - 서울특별시 12개 자치구(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인원 >

직업군	한국표준직업분류(소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세분류)	인원(명)
보건·의료·돌봄 (20만명)	243. 간호사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 보건교사 등	57,454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응급 구조사, 위생사, 의무 기록사, 간호조무사 등	41,851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및 교사 보조 서비스 종사원,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72,930
	951. 가사 및 육아도우미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29,862
교통·운수 (8만명)	873. 자동차 운전원	택시운전원, 버스운전원,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 포함)	82,154
택배 (7만명)	922. 배달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 등	71,084
환경미화 (16만명)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160,99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2차년도(2019년)

서울시 필수노동자

[서울지역 자치구별 필수노동자 현황]



각주: 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거주지 기준, 2) 직군별 필수노동자 비율 5%이상 자치구의 필수노동자 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2차년도(2019년)

서울시 필수노동자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직업군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정규직	비정규직
보건·의료·돌봄	121,306명 (60%)	74,046명 (37%)	4,269명 (2%)	2,475명 (1%)	111,426명 (57%)	83,927명 (43%)
교통·운수	44,931명 (55%)	12,491명 (15%)	24,732명 (30%)	0명 (0%)	39,113명 (68%)	18,306명 (32%)
택배	20,777명 (29%)	31,973명 (45%)	18,334명 (26%)	0명 (0%)	19,810명 (38%)	32,940명 (62%)
환경미화	46,684명 (29%)	105,376명 (65%)	8,936명 (6%)	0명 (0%)	36,486명 (24%)	115,573명 (76%)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직업군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보건·의료·돌봄	233만원	124만원	200만원	236만원	132만원
교통·운수	248만원	132만원	219만원	253만원	158만원
택배	234만원	176만원	261만원	233만원	179만원
환경미화	176만원	101만원	118만원	187만원	104만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2차년도(2019년)

서울시 필수노동자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직업군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보건·의료·돌봄	13,125원	10,695원	11,628원	13,250원	10,818원
교통·운수	12,284원	8,691원	12,398원	12,184원	10,045원
택배	12,775원	9,517원	10,702원	12,925원	9,522원
환경미화	9,690원	8,518원	6,873원	10,238원	8,448원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직업군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보건·의료·돌봄	42시간	30시간	40시간	42시간	31시간
교통·운수	50시간	39시간	46시간	51시간	39시간
택배	44시간	42시간	57시간	42시간	42시간
환경미화	43시간	29시간	38시간	43시간	30시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2차년도(2019년)

서울시 필수노동자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직무만족도

직업군	임금 또는 보수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무 환경	근로 시간	복지후생 제도	전체 평균
보건·의료·돌봄	62점	70점	71점	66점	69점	61점	67점
교통·운수	55점	65점	67점	66점	67점	58점	63점
택배	54점	62점	66점	66점	62점	50점	60점
환경미화	59점	61점	64점	63점	66점	57점	62점
전체 평균	58점	65점	67점	65점	66점	57점	63점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직업군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보건·의료·돌봄	40%	47%	11%	1%
교통·운수	16%	64%	18%	1%
택배	8%	76%	11%	5%
환경미화	24%	51%	20%	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2차년도(2019년)

필수노동자로서 환경미화원의 노동

필수노동자와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 청소행정서비스의 최전방에서 대면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 사회 기능유지와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
- 노동계와 산업안전 분야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연구와 논의 이루어졌음
 - 노동계 :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 직영과 민간위탁 간의 차별, 지자체의 무관심 등
 - 산업안전 분야 : 작업환경 안전문제, 안전사고 및 스트레스, 건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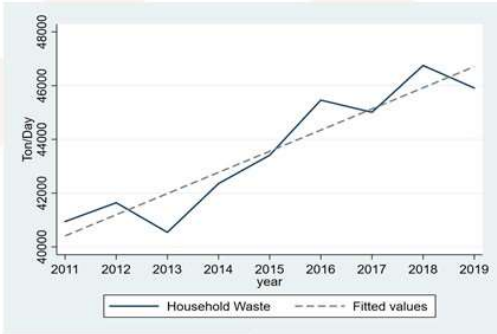
[성상별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작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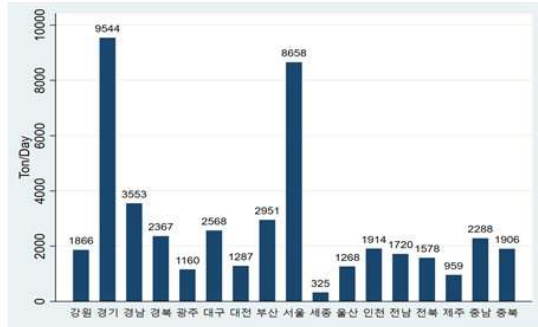
출처: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안전보건공단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현황

연도별 생활(가정)폐기물 발생 추이



지역별 1일 생활(가정)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 현황



자료: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19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현황

- 2019년 기준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천847톤, 이 중 **66%(6천535톤)은 재활용**, **23%(2천246톤)은 소각**, **10%(979톤)은 매립**
 - 송파구(808톤), 강서구(599톤), 강남구(591톤), 서초구(498톤), 마포구(478톤) 순으로 많음
- 2019년 기준 서울시 주민 1인당 하루 생활 폐기물(쓰레기) 배출량 평균 **1kg**
 - 중구(3.03kg), 종로구(2.1kg)가 많고, 노원구(0.59kg)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음
- 2019년 기준 서울시 쓰레기수거 장비 현황은 환경미화원 **5,527명**, 차량 **2,178대**, 손수레 **665개**, 중장비 **61개**
 - 환경미화원은 강남구(586명), 관악구(331명), 강북구(330명), 마포구(318명), 영등포구(271명) 순으로 많음. 이 중 **직영(공무직)이 40%(2천여명)**, **민간위탁대행업체 소속이 60%(3천여명)**
- 2019년 기준 서울시 청소예산 주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동대문구(82.8%), 가장 낮은 자치구는 금천구(44.7%)
- 2019년 기준 서울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58.3%**로 처리비용이 더 큼
 - 마포구(125.8%)와 은평구(108.4%)만 재정자립도가 100% 이상
 - 영등포구(27.4%), 중랑구(38.5%), 구로구(43.5%), 관악구(44.7%) 순으로 낮음

자료: 2019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 2015-2020년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환경미화원 5천 700명. 이 중 35명은 사망했고, 5천 421명은 부상
 - 청소차량 및 일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압축기 등 유압장치에 의한 협착,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자상, 중량물 취급과 무리한 동작에 따른 사고성 요통, 호흡기질환이나 각종 감염성 질환 등
-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위험도도 높음
 - PM2.5(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박테리아와 곰팡이 농도 등 높음

[환경미화원의 안전위험 요인]



안전지침,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안전기준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
 - 환경미화원의 보건조치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청소차량: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안전물품지급: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

주간작업 원칙, 3인 1조,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 조치

- 중앙정부 관계부처 합동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 2018년 안전한 선진 청소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노후 청소차 교체,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등을 추진
- 서울특별시 자치구 환경미화 근무환경 개선 조례 제정
 - 100리터 규격 전면 폐지, 주간 작업과 3인 1조 원칙, 지정된 안전장구 착용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 생활폐기물 서비스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비사적재라는 성격 공공서비스 유형
 - 생활폐기물 서비스 자체가 성과와 서비스 질 측정이 쉽고,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직접하기보다는 민간위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공사업
 - 그러나, 청소비용증가, 청소업체의 부정과 종사자의 희생과 노사관계의 악화 등 부정적 현상 발생

〈 업무분야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현황 〉

	전국			서울		
	합계	직·공영	민간위탁	합계	직·공영	민간위탁
합계	36,330	16,452 (45%)	19,878 (55%)	5,745	2,357 (41%)	3,388 (59%)
가로청소	12,455	9,968 (80%)	2,487 (20%)	2,157	1,806 (84%)	351 (16%)
일반쓰레기	10,694	3,393 (32%)	7,301 (68%)	1,217	- (0%)	1,217 (100%)
음식물쓰레기	5,301	980 (18%)	4,321 (82%)	787	- (0%)	787 (100%)
재활용품·대형폐기물	7,880	2,111 (27%)	5,769 (73%)	1,584	551 (35%)	1,033 (65%)

각주: 2021년 현재 서울지역 일부 자치구에서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직영으로 전환하였음.
 자료: 김철 외(2019),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도개선방안 (05월 행정안전부 전수조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서울지역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대행업체 수는 개,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종사자 인원은 명
 자료: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2020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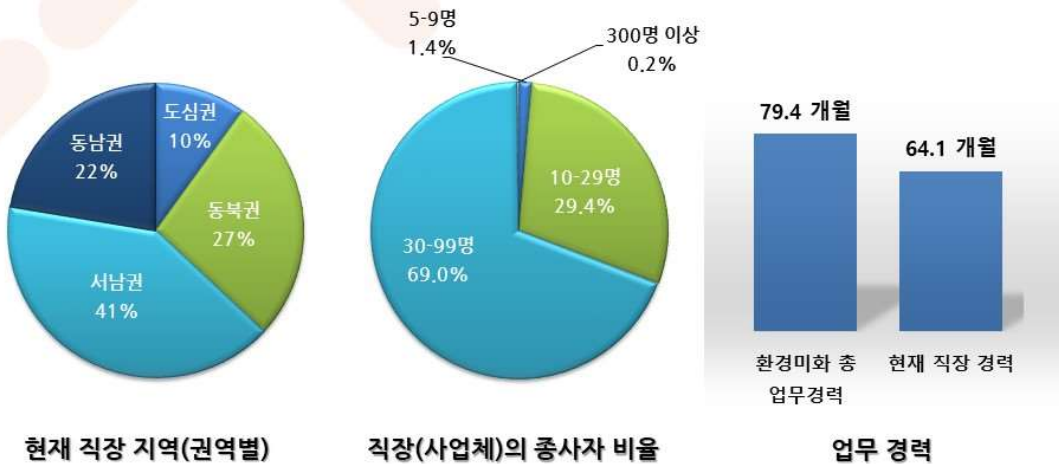
- ▶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인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서울지역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작업 환경 개선, 사회안전망제도 개편 등의 필수노동자 지원방안을 모색
- ▶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21년 6월 ~ 8월 (조사수행기관: 케이스탯리서치)
 - 조사대상: 서울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수집·운반원) (유효표본 500명)
 - 조사방법: 대면 설문조사(전화 또는 이메일 조사)
- ▶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인식 조사 (면접조사)**
 - 조사대상: 서울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수집·운반원, 재활용선별원) 20명
 - 조사방법: 대면 인터뷰(녹취)/도봉구, 금천구, 강남구, 구로구 민간위탁기관 7개사 & 강동구 인터뷰

설문조사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조사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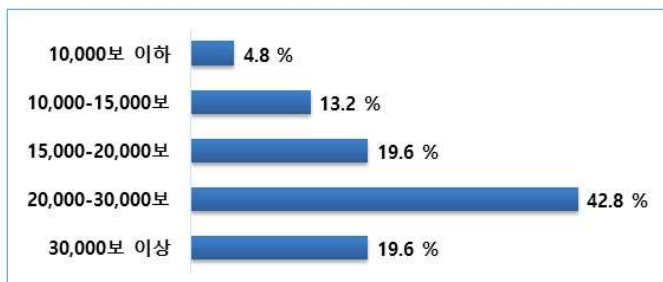
		인원	%			인원	%
전체		500	100.0	직무	수집원(상차원)	250	50.0
권역	도심권	50	10.0		운전원	250	50.0
	동북권	135	27.0	연령	20대	8	1.6
	서남권	203	40.6		30대	34	6.8
	동남권	112	22.4		40대	113	22.6
5-9명	7	1.4	50대		256	51.2	
종사자 수	10-29명	147	29.4	60대 이상	84	16.8	
	30-99명	345	69.0	무응답	5	1.0	
	300명 이상	1	0.2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2.2
	성상	중량재(생활)쓰레기	226		45.2	중학교 졸업	43
음식물쓰레기		116	23.2		고등학교 졸업	371	74.2
재활용쓰레기		140	28.0		전문대 졸업	38	7.6
대형폐기물		18	3.6		대학교 졸업 이상	37	7.4

조사결과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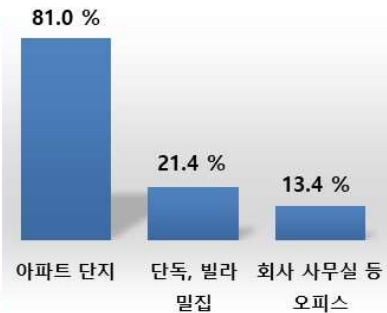


업무범위 및 수행방식

성상별 종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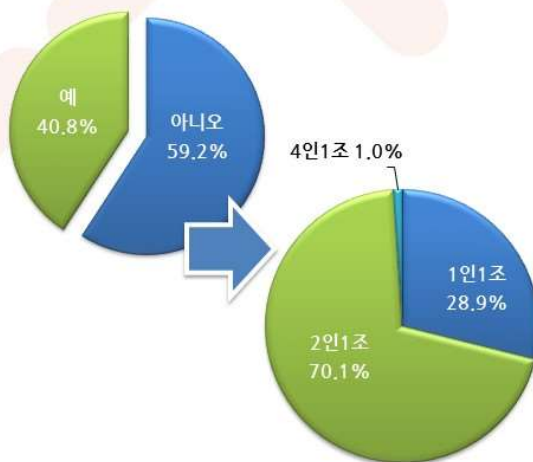


수집원 업무수행시, 하루 평균 걸음 수



담당업무 구역

업무범위 및 수행방식



3인 1조 작업수행 여부

작업현장 업무 (중복응답)	%
골목길 쓰레기 수거	69.6
쓰레기 적하작업	60.6
청소차 운전	55.4
정해진 경로에서 가연, 불연 쓰레기 수거	34.4
쓰레기 내기가 어려운 주변 문전 수거	29.0
재활용품, 적재함 선별, 분류 작업	11.0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10.4
대형폐기물 수거	7.0

노동환경(작업환경, 휴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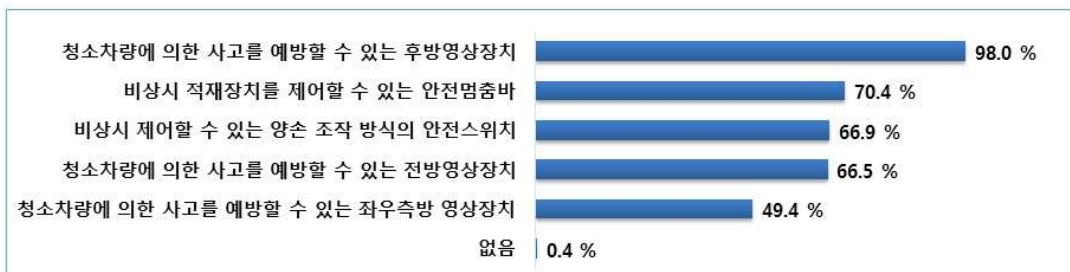


지급받고 있는 안전 보호장구(중복응답)

노동환경(작업환경, 휴게시설)



안전수칙 (중복응답)



청소차량 안전장치 (중복응답)

노동환경(작업환경, 휴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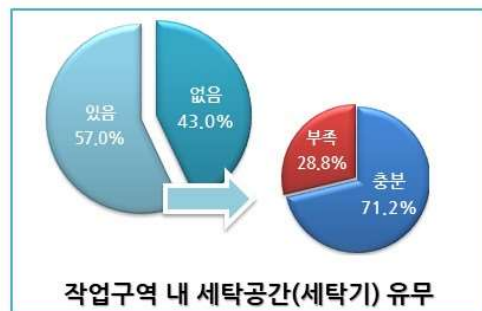


업무 중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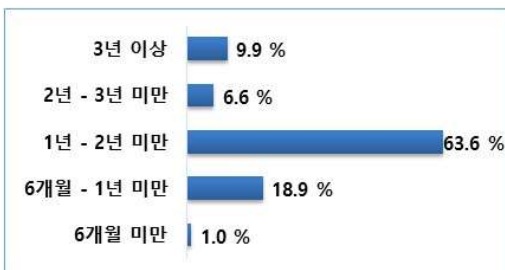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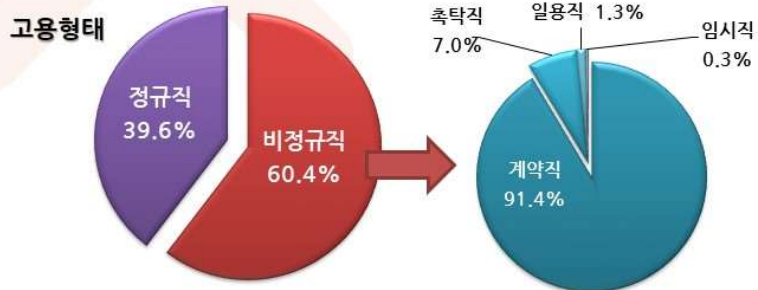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험(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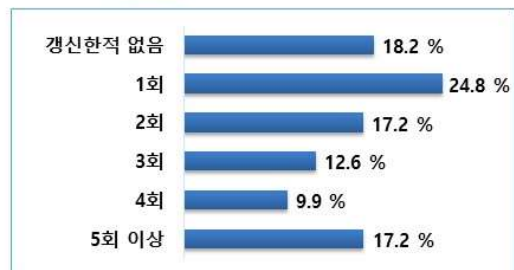
노동환경(작업환경, 휴게시설)



고용안정(고용형태·계약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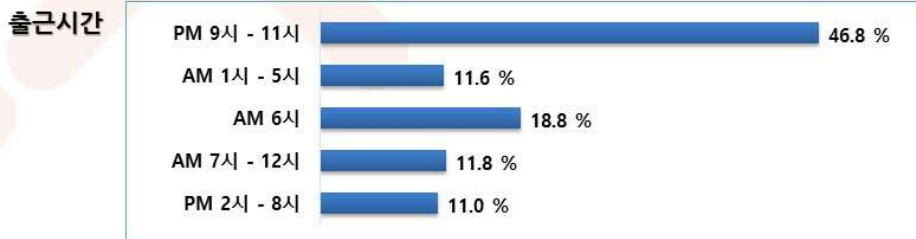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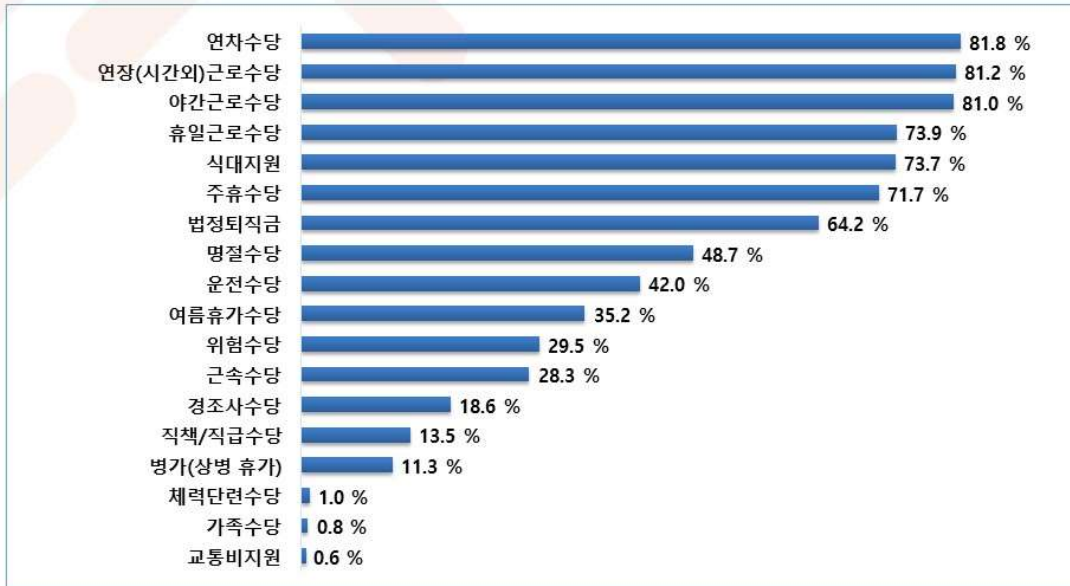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횟수

노동조건(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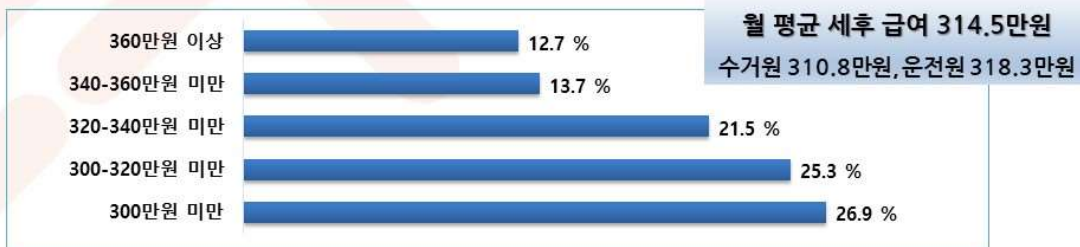
- ◆ 주당 근로일 수 6일
- ◆ 계약상 1일 근로시간 8.1시간
- ◆ 코로나19 이전 실제 근로시간 8.1시간
- ◆ 코로나19 이후 실제 근로시간 8.2시간
- ◆ 휴게시간 1시간

노동조건(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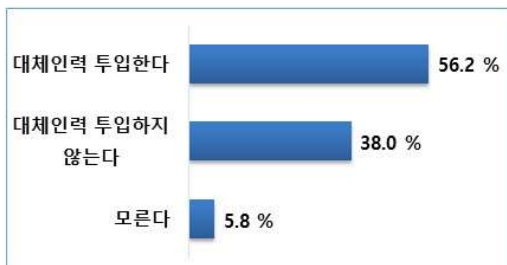


현재 지급받고 있는 수당(중복응답)

노동조건(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임금수준 (야간근무, 토요일근무, 휴일근무 포함)



연차휴무 사용 시 회사에서 대체인력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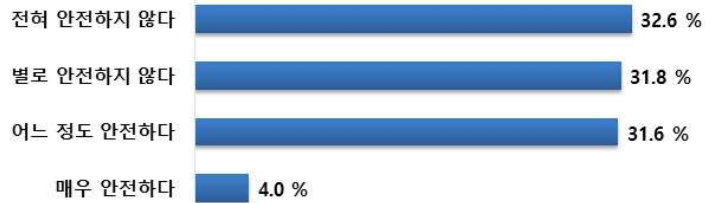


현재 직장에서 상해보험 가입 유무

코로나19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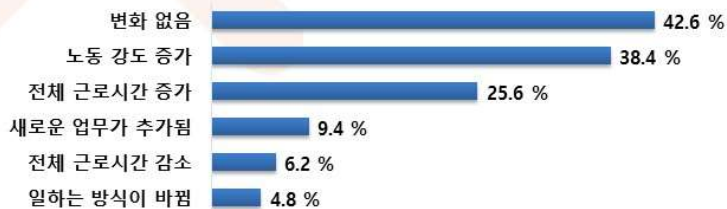


직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험



작업현장,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정도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의 변화(중복 응답)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수거하는 쓰레기 양(ton)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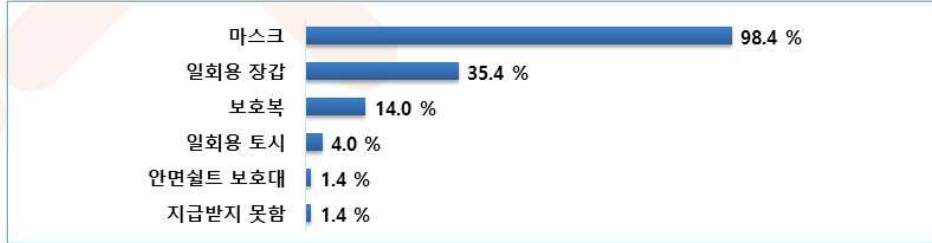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청소차량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km)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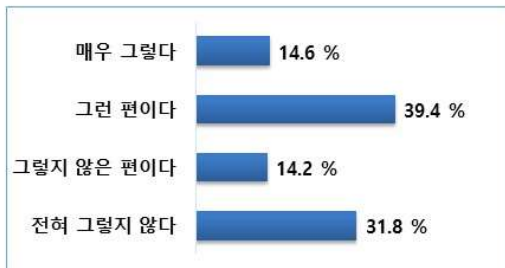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임금(상여 포함) 변화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호장구(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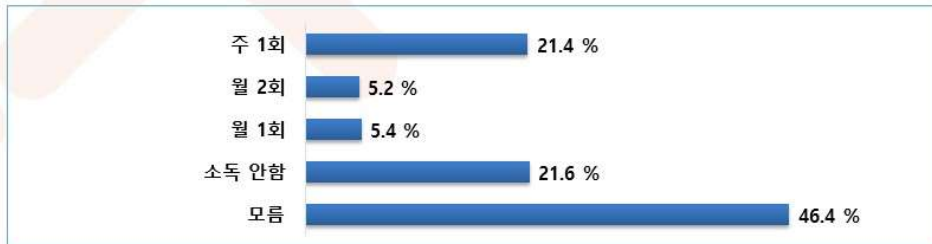


현재 직장에서 코로나19 유증상 시 휴가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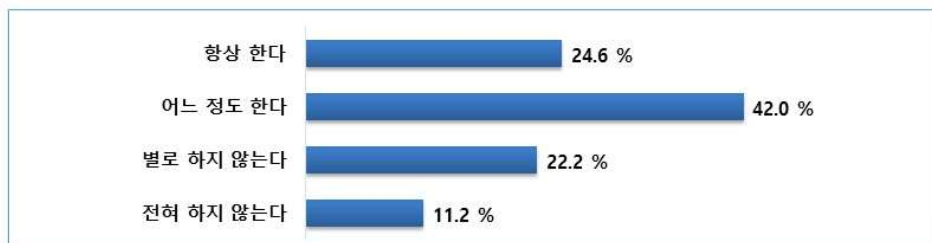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휴가 기준

코로나19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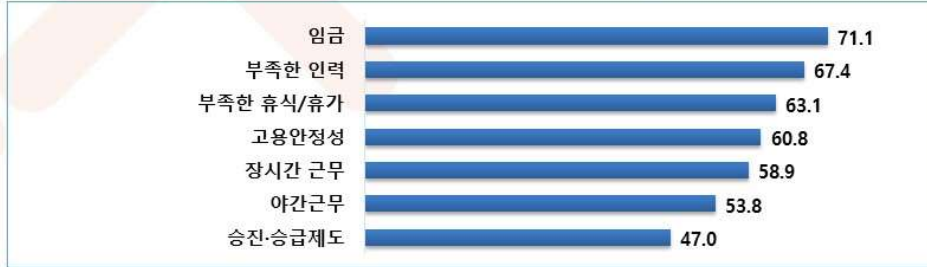


사업장 휴게실 및 현장 휴게실 정기 소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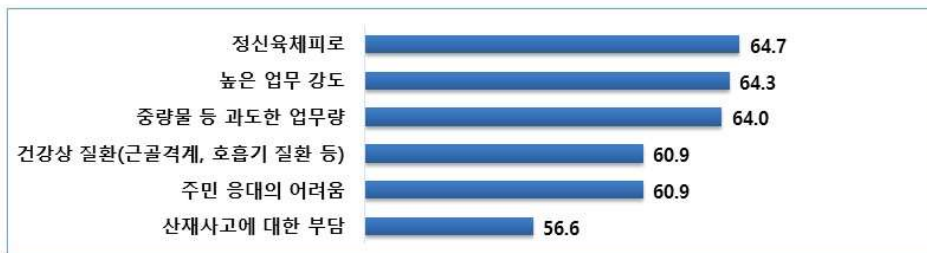


코로나19 방역지침 교육이나 안내

애로사항



근로조건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100점 환산)



노동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100점 환산)

애로사항



작업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100점 환산)



사회적 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100점 환산)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회사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100점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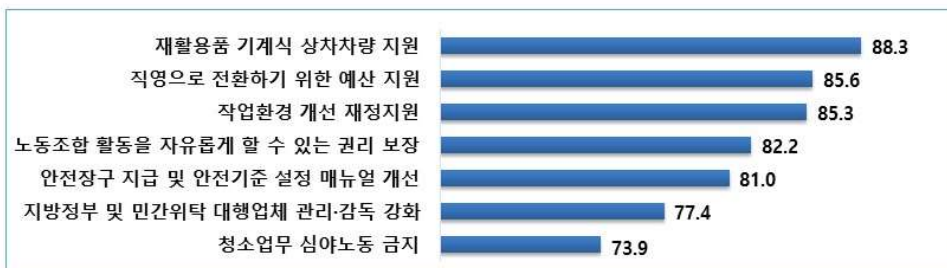


서울시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100점 환산)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코로나19 재난 시, 서울시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100점 환산)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100점 환산)

면접조사

➤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FGI 및 1대1 심층면접조사

- 직무 : 운전원, 수집원(상차원), 재활용센터 내 작업원
- 경력 기간은 최소 첫 1년 8개월부터 20년까지
- 대다수가 시작은 상차원으로 진입하지만, 이후 운전원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

순번	조사(인터뷰)지역	민간위탁 업체 수	직무별 인원	면접조사/인터뷰
1	도봉구	1개사	운전원 2인, 수집원 2인	면접조사
2	금천구	3개사	운전원 2인, 수집원 2인	면접조사
3	강남구	1개사	운전원 3인, 수집원 2인	면접조사
4	구로구	3개사	운전원 2인, 수집원 2인 구로자원순환센터 1인	면접조사
5	강동구	1개사	운전원 1인, 수집원 1인	인터뷰

고용안정

➤ 고용승계

- 자치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변경으로 고용불안
- 업체가 변경되지 않아도 고용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저희는 고용승계도 안되고 회사 옮길 때 퇴사 처리 되고 옮긴 거거든요. 3년에 한 번 그렇게 움직이면 관둬지는 사람이 많아요.
- 거의 일을 하다가 회사에 찍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 정년보장

- 민간대행업체의 경우 정년을 60세로, 이후 축락직의 형태로 근무
- 청년 취업난으로 청년고용지원금 때문에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 확실치 않음

- 60세 이상인 분들은 연봉제인지, 축락 1년 계약인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 60대도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 채용시 청년고용지원금을 업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령 노동자들이 정년까지 있는 경우도 없어지고 있어요.

노동조건

➤ 근로시간

- 지속해서 야간근무(21시-6시)를 하고 있음. 주간근로에는 출근길 차량들로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
- 초과근로가 자주 발생. 특히, 코로나19로 쓰레기양이 경우 자발적으로 2시간 먼저 나감

- 낮에 잠을 자도 피곤해요. 야간이라 졸리죠. 그리고 새벽은 차들이 달리는게 무겁게 달리거든요.
- 저희는 월요일에 밥 못 먹어요. 아예, 1톤은 큰 통을 부어야 하니까.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소각장 문 닫는 시간 전에 가야해요. 그래서 막 옮겨 실어야 하고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맨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요. / 코로나 이후에 한 차가 더 들어가요. 한 차에 1톤 700이 더 들어가거든요.

➤ 임금

- 기본급 최대 2,265,500 최소 1,952,779원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자치구도 있음

- 수령액이 다 합쳐서 350정도 받죠. (기본급, 운전/위험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 추가 수당 별도로 주고 일하는 시간 측정해서 적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 근무시간이 야간이면 1.5배이고, 휴일 수당도 있고, 초과근무 수당도 원래는 있어야 하고, 특수작업 수당 9만원도 붙어야 하고, 운전수당 20만원 또 있고..

업무 수행 방식

➤ 업무 수행과정

- 성상별 쓰레기수집 ⇒ 상차 ⇒ 정리 ⇒ 이동 ⇒ 하차 : 적환장 과정이 없고 바로 처리장으로 옮겨짐

➤ 3인1조

- 환경부 권고 사항인 3인 1조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지지 않음
- 3인 1조는 2인 1조로 할 때 보다 훨씬 많은 지역을 맡아야 하는 부담이 증가

- 5톤은 3인 1조를 지켜지지 않아요. 누가 연차라도 가면 2인 1조예요.
- 재활용은 1인 1조죠. 음식물만 3인 1조로 하고 있어요.
- 생태 5톤 같은 경우도 2인 1조예요.
- G지역은 3인 1조 하고 있어요.
- 한 명 미리 내려 놓고 다른 작업자들이 도는 건데 3인 1조가 2인 1조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산업재해

▶ 산업재해 경험

- 찢림, 배임과 같은 산업재해는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산재로 여기지 않음
-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일어남
- 전도, 추락 사고, 교통사고 발생

- 찢리고 베이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산재 처리도 안 해 그런 건 밴드나 붙이고 말지.
- 음식물은 리어카를 끌거든요. 그러면 무게가 상당해서 내리막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담는 거 25리터는 크잖아요. 그거 들면 허리 나가.
- 소각장에서 톤수를 제한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있죠
- 비오는 날 장화 신고 일하다가 미끄러져서 머리가 깨졌지. 그래서 한 달 산재 처리하고
- 일하고 있는 중에 택시가 칠 뻔 한단든지.. 야간은 교통사고 확률도 높아요. 한 달에 한 두번씩 사고 나

▶ 산업재해 예방

-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지자체, 대행업체들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안전화 연 2회, 안전 조끼 연 1회, 장갑 월 15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고 있었음

산업재해

- 폭설시에는 수거를 보류하지만, 폭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음
- 산업재해 안전교육은 형식적

- 작업화는 1년에 2개, 장갑은 한달에 15개, 우비는 1년에 한 개,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받아요
- 여름에 재활용 분류 선별장 에어컨 있는 곳은 28도-29도, 나머지는 32도
- 안전 교육 매뉴얼이 없이 건설 노동자 관련된 거 이런 교육 하나까 와 달지가 않지

▶ 산업재해 처리방식

- 산업재해 발생 후의 처리 방식도 업체마다 차이가 있음
- 산업재해가 발생한 환경미화원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공상처리하거나 산업재해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자발적 퇴사를 강요

- 저희 산재하면 무조건 사표 써야 해요. 회사가 그래요. 그냥 사표 쓰라고 가져와요
- 회사에서 힘써야 되는데 관찮겠냐? 해서 퇴사 처리 한 거죠. 본인도 어렵겠다고도 했고
- 지금까지 2년간 산재가 11건은 발생했죠. 다치면 산재는 해줘요.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시 대응 체계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

- 코로나19로 재활용이 증가한 경우, 상차과정에서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2인 1조
- 코로나19로 증가한 쓰레기 양을 처리하기 위해 휴식시간 줄이기, 2시간 일찍 출근(초과근무 인정 안됨)
-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증대

- 쓰레기 양 30% 늘었고, 재활용 진짜 많이 늘었죠. 음식물도 20% 늘었어요.
- 아침에 4시에 나가요. 2시간 더 일찍 나가서 쉬지도 못하고, 밥 먹자마자 바로 차 타가지고 계속 이래
- 코로나19 폐기물은 감염될 수 있어서 꺼리는데 회사에서 치우라고 전화 오면 치워야 해요.

▶ 코로나19 예방 대책

-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개인보호장비 지원 거의 없음 (제공되더라도 일회용 장갑, 마스크 지원 최소)
- 백신 접종 후 유급휴가 권고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회사에서 코로나19 개인보호장비 따로 준 건 없고, 구청에서 나왔었는데 코로나 전체 기간 동안 3번에 걸쳐서 20개씩 마스크 지원됐어요.
- 백신 맞고 나서 바로 일 해요. 팔 아파도 일찍 퇴근도 못하고 다 일했어요.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시 대응 체계

▶ 코로나19 감염 시 대응 체계

- 코로나19 감염 시 유급휴가 처리는 되지만, 대체 인력은 없음
- 확진자가 발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때도 쉬는 시간에 검사 받고, 다시 일을 한다던가 주간엔 검사

- 코로나 대체 인력은 안 들어오고, 저희가 그 일을 다 처리했는데 그 보상을 회사에서 추가 노동에 관련될 걸 13만 천원씩 받아서 저희에게 줬죠.
- 검사는 쉬는 시간에 다 같이 받았죠. 야간작업을 하고 낮에 쉬는데 낮게 가서 받고 온 거죠.

현장에 필요한 대책

➤ 고용 안정화 - 직영 전환

- 직영으로 가야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죠. 돈 주는 거는 구청에서 하니까 직접 고용하는게 맞고 공공서비스니까 관리운영을 직고용을 해야죠

➤ 적정 임금 표준체계 마련 - 서울시 안에서라도 통일된 기준 마련

- 규정에 있는 급여만이라도 제대로 맞춰달라는 거죠. 우리는 워라밸이 꿈같은 얘기거든요?

➤ 작업환경 개선 - 보호장구 제공, 작업장 내의 휴게시설 부족 등

- 자원 센터가 혐오시설로 보니까 지하화 됐거든요. 그래서 공기 순환도 안되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음식물 악취에 대한 해결 기준도 없고..
- 인원과 장비 보충도 중요하죠. 작업복이나 보호장구 품질 개선과 품목 확대를 해주세요.

➤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 필수노동자 지정되었으나 지원 없고, 체감도 낮아

- 코로나19로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백신 휴가나 코로나 병가 권고라도 해줘야..
- 건강검진도 형식적이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제언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제언

- 필수노동자 관련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기능을 확대
 -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조직과 기능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조직(서울의료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이동노동자쉼터,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 근로조건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작업안전 개선, 중장기적 고용안정
 -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청소행정에는 노동 효율적인, 노동자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의견

서울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지원 조직과 기능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의견

서울시 교통·운수 종사자 지원 조직과 기능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의견

서울시 택배·배달 종사자 지원 조직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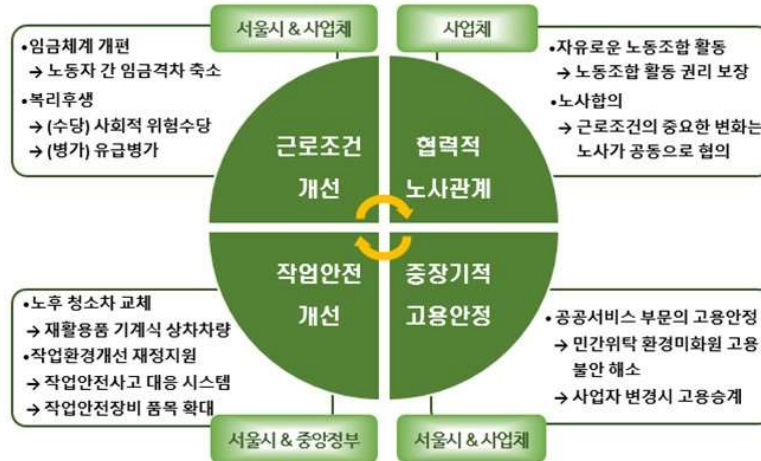


서울시 청소·환경미화 종사자 지원 조직과 기능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 서울시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노동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등)가 협력하고 노력, 서울시민들의 관심도 필요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청소행정에 대한 의견

- **긴급상황(재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시스템 마련 _ 자치구별 대응체계 수립**
 - 작업 수행시 방역 대응 업무, 방역 물품 지급, 감염 폐기물 처리 방법 등
- **노동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체계 확립**
 - 수거 주기 개선: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수거 주기 다양화
 - 공동수거체계 도입: 동일 생활권인 자치단체간 생활폐기물의 전체 또는 품목별로 공동수거체계
- **민간위탁 대행업체의 공정한 입찰 및 업무 수행 모니터링 강화**
 - 민간위탁 공개입찰의 공정성 강화(자치단체와의 유착 의혹 제거)
 - 적정 인력 투입, 노동자 복리후생, 직장 갑질 등 모니터링 강화
- **안전한 청소차량 개선 지원**
 - 노후 청소차 교체 및 친환경청소차 보급 확대
 - 소규모·영세사업장에게 정부 및 지자체에서 좌우측방 영상장치 설치,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 작업자와 운전자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터폰, 버튼 설치 등의 안전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지원



감사합니다



〈토 론 문〉

I

남 우 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토론문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 보고서에 대한 총평

- 현황, 실태, 정책제언 등이 짜임새 있게 서술되었음.
- 필수노동자 개념 및 지원에 대한 국가별 사례, 서울시 필수노동자 현황, 환경미화원 업무 등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서 많은 참조가 됨.
- 환경미화원의 노동과정, 안전위험요인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는데, 필수노동으로서의 환경미화원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매우 적절한 서술임.
- 인력 현황, 민간위탁 현황 등 자세히 서술한 것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 68쪽 : 방한용품, 의복, 장갑, 장화, 보호안경, 미끄럼방지 장화, 의료 위생의약품, 절단보호 장갑, 무릎보호대, 허리 손목보호대는 많은 인원이 지급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행비(도급비)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겠음.
- 69쪽 : 청소차량 안전장치 관련 약 30% 정도가 비상시 적재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설비 규정이 별도로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70~74쪽 : 일하면서 겪는 위험, 사고에 대한 경험자 비율이 높는데,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산재처리 현황이 어떤지?
- 74~76쪽 : 휴게실 조건, 샤워실 등이 열악한데, 서울시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사업’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지 않은 것인지? : “서울시, 193개 환경미화원 휴게실 샤워시설 완비한다”(서울시 보도자료, 2010. 11. 29.)
- 87쪽 :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량은 대체로 증가했고, 근로시간 증가가 25.6%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96.6%가 동일하다고 답함. 시간외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법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 99쪽 : 직영 민간 청소노동자 간의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77.2%인

데, 차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함. 임금, 고용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항상적 과제인데, 코로나19 감염 예방 과정에서의 차별은 필수노동자 지원과 관련해서 보다 특별히 조명되어야 할 것임.

○ 정책제언에 대해

- 143쪽 :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조직과 기능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을 확대하여 필수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되나 전체적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을 총괄할 곳은 필요하다고 봄. 총괄부서가 직종별 담당부서와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 148쪽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근로조건 개선, 작업안전 개선, 중장기적 고용안정, 협력적 노사관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과제를 제시했음. 노동환경 개선 과제는 궁극적으로 직영(준공영 포함)화를 통해 해결해야 함. 많은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 예산집행의 비효율, 부정부패, 열악한 노동환경 등 위탁방식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이는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이라기보다는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체계의 개선으로 접근되어야 함.
- 149쪽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차량 개선, 수거운반체계 확립이 제안되었음. 일반적인 개선 과제와 필수노동자 지원 과제가 구분될 필요가 있고, 필수노동자 지원 과제를 보다 부각시키는 것이 좋겠음. 이렇게 해야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가 구분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도 집중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 사회적 위험수당, 유급병가, 백신휴가제 등 복리후생 지원, ▲ 근무복 및 안전장구 지급에 있어서의 직영과의 차별 해소, ▲ 미비한 휴게시설, 샤워시설 개선, ▲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원 충원, ▲ 자가격리자 및 생활지원센터 폐기물 처리 구분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강조되어야 함.

〈토 론 문〉

Ⅱ

김 영 수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환경분과 분과장)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환경분과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지원방안

1. 인력 및 장비 확충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로서 공공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보호 지원해야 하는 노동자다. 코로나19로 택배 배달음식이 급증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으며 주. 야간 매일같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치워야 하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늘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20년 8월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상반기 생활폐기물은 4,890톤에서 5,349톤으로 늘어 전년 동대 대비 11.2% 증가했다 종이류는 23.9% 증가한 889톤 플라스틱류는 15.6% 증가한 848톤 비닐류는 11.1% 늘어난 951톤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은 전체적으로 증가 되어진 현 상황이며 특히 급속도로 증가되어진 재활용쓰레기는 배달 및 택배로 인하여 기존의 인력으로 행하여지던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분류 수거 운반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에 현장에서 일하는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및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티로폼의 증가로 인한 인력 및 장비의 추가 투입이 절실함. (기존 재활용 수집운반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일반재활용 쓰레기와 달리 차량 및 인원이 추가 투입되지 않아 기존의 인력이 수행 함)

또한, 환경부에서는 페트병과 비닐류를 분리배출하려 합니다. 환경부안으로는 하루를 페트병과 비닐을 수거한다고 하지만 이는 집단거주지역(아파트)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성상분류로 인하여 추가 장비와 인원이 확충되어야 환경부 및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페트병과 비닐의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의 위험요소

환경미화원은 작업형태에 따라 위험 폐기물(깨진 유리 등)수거, 인력부족,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순으로 사고발생, 시민 협조 부족,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작업(담당)구역이 넓은, 노후화된 수거차량 순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 재해 사례

(끼임) 재활용품 상차 중 압축 기계에 손 또는 발이 끼이면서 골절됨
(넘어짐) 적재함에서 재활용품 정리중 차량이 움직여 넘어지면서갈비뼈,무릎을다침
(떨어짐) 차량후미 발판에서 떨어지는 스티로폼을 잡으려다 떨어짐
(떨어짐) 차량에 그물망 설치를 위해 올라가다 빗물에 미끄러져 2m 높이에떨어짐
(떨어짐) 적재함에서 재활용품 정리 중 물기 또는 비닐봉지를 밟고 미끄러져 떨어짐
(근골격계질환) 배출된 병 자루(30kg)를 차량에 실어 올리려다 갑자기 허리통발생
(베임·찢림 재활용마대에 담김 유리조각에 손바닥을 찢리며 인대가 파열됨.)

▷ 안전지침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작업안전 기준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보건조치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제14조5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 제14조의 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할 안전기준 (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 이라한다. 를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 16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등

-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안전기준”이라한다)을 적용해야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멈춤바 및 양손조작 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 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함에도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강제력이 없음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문제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이 업체의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청소비용증가, 청소업체의 부정과 자치단체와의 유착의혹, 종사자의 희생과 노사관계의 악화 등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의견과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 서비스를 공공성이 아닌 비용성만으로 만 바라볼 때, 노동자들의 희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1)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와 민간위탁 현황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책임은 1차적으로 25개 자치구에, 2차적으로 서울시장에게 있다. 자치구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을 갖고 수집하며, 서울시는 자치구의 수집처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 3인 1조(상차원 수집원 2명, 운전원 1명) 작업수행 여부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청소차량 1대 기준 3명 근무)은 40.8%만 지켜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3인1조가 지켜지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대부분 2인 1조(70.1%)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1인1조도 28.9%를 차지했다. 종량제쓰레기 작업 환경미화원은 60.6%가 3인 1조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휴게실 유무 및 시설 상태

적환장(또는 자원순환시설)의 휴식공간은 약 80%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적환장(또는 자원순환시설) 휴식공간은 50% 정도가 부족하고, 42% 정도가 불청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업구역 내 휴식공간은 약 42%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구역 내 휴식공간이 있더라도 약30%는 부족하고, 20%는 불청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구역 내 세면·샤워실은 약40%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쓰레기 작업의 경우 약 49%가 세면·샤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구역 내 세탁 공간(세탁기)는 43%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탈의공간도 40%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구역 내 세탁 공간(세탁기)와 탈의공간을 갖추고 있더라도 약 29%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민간위탁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개선, 근로조건과 작업방법의 선진화, 처우개선과 안전보장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종량제 쓰레기봉투 부피 제한이 필요하다. (50L 이하로 제한)

- 근골격계 질환예방

② 음식물쓰레기

가) 배출 용기 비치가 필요하다.

- 들짐승·조류로 인한 음식물봉투 훼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나) 음식물봉투의 부피제한이 필요하다.(10L이하로제한)--근골격질환 및 요통의 원인

③ 재활용쓰레기

가) 분리배출이 철저히 요구됨 --배출방법의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나) 수거방법 및 수거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압착차량으로 교체요구)

산재사고의 상존 (낙상, 미끄러짐, 골절)

④ 대형폐기물

가) 수거차량의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리프트 차량으로 변경

나) 안전보호 장구 및 복리후생의 현실적 반영이 필요하다

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른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 현재시스템은 계약기간 내에서는 변동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라) 생활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지자체 자체 처리가 되어야 한다.

마) 소각장 시설 건설, 선별장 시설 확보, 집하시설 및 처리시설(대형폐기물)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5.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1)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지원해야 할 과제

· 임금체계의 개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노무비 계산에 있어 단서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의 문구를 삭제하여 산출하여 한다.)

· 중앙정부, 서울시, 25개 구청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 근무대기실 개선, 휴게실 정비 등 복지시설 확충

· 현장에서의 근무대기실 확충 및 작업현장 쉼터 설치 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수집·운반 구역(각 거점해당동에 폭설, 폭우, 폭염 등에 임시 대피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임시휴게실: 쉼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수집·운반 구역 내 각 거점해당동에 폭설, 폭우, 폭염 등에 임시 대피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임시휴게실이 필요하다. 예 : 쉼터

3) 근무형태의 변경 :

· 야간 격일지역 수거 → 야간매일 전 지역 수거 → 주간 매일 전 지역 수거

4) 작업복 및 작업물품 제공(복리후생품목)

- 구청에 산정되어 있는 복리후생 품목에 있어 무릎보호대, 손목보호대, 발목보호대, 겨울 방한장갑, 발열 조끼, 동복1벌 추가 질병감염예방을 위한 KF-94 마스크 (근무일수) 등 추가와 각 지급 품목의 현실적인 가격을 가격 책정 및 1년 또는 2년에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종합건강검진의 필요.

5)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에 의한 재난 및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에도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직무를 갖는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산상황에서는 재난수당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차량의 개선

- 재활용 쓰레기 수집운반의 차량 1톤 차량에서 3.5톤 압착차량의 보급
현행되어지고 있는 1톤 일반차량, 1톤 카고 차량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근골격계질환 및 생명의 위협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비용의 증가와 산업재해의 증가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량의 구조적인 개선 재활용 쓰레기 수거 운반 압착차량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 경유를 사용함으로 매연에 의한 질병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 전기차 또는 수소차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유재현 판사)은 2021. 1. 14. 순천시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폐암 진단(폐암 발암 물질인 디젤 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의 직업성 질병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 차량을 운행하거나 발전소를 돌리면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NO₂)가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 발생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산화질소 노출이 가장 많은 상위 25% 성인에서 파킨슨병이 발생할 위험이 이산화질소 노출이 가장 적은 하위 25% 성인보다 1.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환경 및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확대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환경 및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

- 8)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구청,주민,업체,노동자) 및 체험학습 실시
- 주민의 공동체의 환경 및 자원순환의 회수율을 높이고 환경보호를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이해와 직접체험을 통하여 민간위탁 청소노동자의 애로사항과 주민과의 협조를 통한 생활폐기물배출의 감소 및 자원회수율을 증가로 인한 환경과 자원 순환의 이해를 높이며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9) 기존의 대행업체의 기초단체의 관리 방식으로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처우와 복리후생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민간위탁대행 업체를 감시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도 이 시간에 인건비 착취, 열악한 복리 후생, 노동력 착취, 적정인력 미채용을 통하여 민간위탁환경미화원을 산업재해와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 철저하고 현미경 관리 감독과 강력한 처벌초치만이 시정될 수 있으며 이것은 현재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서울시민이 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www.labors.or.kr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대표전화 02-6925-4349, 상담번호 1661-2020

^^^
서울노동권익센터